

의안번호	2209242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5. 6. 11.
추 계 번호	25G17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방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6년 4,596억원, 2030년 4,542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조 2,838억원(연평균 4,56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5년간 -248.2억원(연평균 -49.6억원)
 -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체비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5년간 -6,160.0억원(연평균 -1,232.0억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5년간 -48.5억원(연평균 -9.7억원)
 -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5년간 -500.5억원(연평균 -100.1억원)
 - 지역도시개발구역 내 창업자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5년간 -126.0억원(연평균 -25.2억원)
 -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5년간 -236.4억원(연평균 -47.3억원)
 -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5년간 -1,970.1억원(연평균 -394.0억원)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의 개발·조성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5년간 -74.5억원(연평균 -14.9억원)
 -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등 개발·조성 후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357.5억원(연평균 -71.5억원)
 -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2,815억원(연평균 -2,563억원)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55.3억원(연평균 -11.1억원)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92.5억원(연평균 -38.5억원)
-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8.4억원(연평균 -3.7억원)
- 이전공공기관이 이전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31.5억원(연평균 -6.3억원)
-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등의 해당 지역 거주목적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3.8억원(연평균 -0.8억원)
- 반환공여구역 등에서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75조의4제1항), 외국인투자 중 사업양수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78조의3제2항),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81조제2항)은 감면실적이 발생하지 않거나, 100만원 미만임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라 지방세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가정
- 또한 산업기술단지 입주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배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78조제3항)은 2024년 시행으로 현재 지방세 감면실적을 확인할 수 없어 향후 지방세 감면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수 없음
 - 해당 규정에 따라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동 비용추계는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54조제1항)	-49.6	-49.6	-49.6	-49.6	-49.6	-248.2	-49.6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체비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74조제3항)	-1,232	-1,232	-1,232	-1,232	-1,232	-6,160	-1,232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적용기한 연장(안 제74조제4항)	-9.7	-9.7	-9.7	-9.7	-9.7	-48.5	-9.7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74조제5항)	-100.1	-100.1	-100.1	-100.1	-100.1	-500.5	-100.1
지역도시개발구역 내 창업자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75조의2제1항)	-25.2	-25.2	-25.2	-25.2	-25.2	-126.0	-25.2
반환공여구역 등에서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75조의4제1항)			미첨부	1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안 제75조의5제1항)	-47.3	-47.3	-47.3	-47.3	-47.3	-236.4	-47.3
산업단지 등 조성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안 제78조제1항)	-389.8	-391.9	-394.0	-396.1	-398.3	-1,970.1	-394.0
산업단지 등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안 제78조제2항)	-17.6	-16.0	-14.7	-13.6	-12.7	-74.5	-14.9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등 개발·조성 후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안 제78조제3항)	-74.2	-72.5	-71.2	-70.1	-69.3	-357.5	-71.5
사업시행자 외 산업단지 등 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안 제78조제4항)	-2,588.4	-2,575.2	-2,562.5	-2,550.4	-2,538.7	-12,815.0	-2,563.0
산업기술단지 입주 시 중과 배제(안 제78조제9항)			미첨부	1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안 제78조의2)	-12.0	-11.5	-11.0	-10.6	-10.2	-55.3	-11.1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안 제78조의3제1항)	-38.5	-38.5	-38.5	-38.5	-38.5	-192.5	-38.5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안 제78조의3제2항)	-3.7	-3.7	-3.7	-3.7	-3.7	-18.4	-3.7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안 제78조의3제3항)			미첨부	1호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안 제81조제1항)	-6.3	-6.3	-6.3	-6.3	-6.3	-31.5	-6.3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안 제81조제2항)			미첨부	1호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안 제81조제3항)	-1.6	-1.0	-0.6	-0.4	-0.2	-3.8	-0.8
합 계	-4,596.0	-4,580.5	-4,566.4	-4,553.6	-4,541.8	-22,838.2	-4,567.7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4조제1항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2	안 제74조제3항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3	안 제74조제4항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4	안 제74조제5항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5	안 제75조의2제1항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6	안 제75조의4제1항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나 사업장 신설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7	안 제75조의5제1항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 12. 31. → (개정안) 2030. 12. 31.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78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 12. 31. → (개정안) 2030. 12. 31.	
9	안 제78조제2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조성 후 산업용 건축물 등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 12. 31. → (개정안) 2030. 12. 31.	
10	안 제78조제3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 후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 12. 31. → (개정안) 2030. 12. 31.	
11	안 제78조제4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 12. 31. → (개정안) 2030. 12. 31.	
12	안 제78조제9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산업기술단지 입주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 배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 12. 31. → (개정안) 2030. 12. 31.	
13	안 제78조의2 (한국산업단지공단 에 대한 감면)	○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 12. 31. → (개정안) 2030. 12. 31.	
14	안 제78조의3제1항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신고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 12. 31. → (개정안) 2030. 12. 31.	
15	안 제78조의3제2항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 12. 31. → (개정안) 2030. 12. 31.	
16	안 제78조의3제3항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	○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 12. 31. → (개정안) 2030. 12. 31.	
17	안 제81조제1항 (이전공공기관 등 지 방이전에 대한 감면)	○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 12. 31. → (개정안) 2030. 12. 31.	
18	안 제81조제2항 (이전공공기관 등 지 방이전에 대한 감면)	○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 12. 31. → (개정안) 2030. 12. 31.	
19	안 제81조제3항 (이전공공기관 등 지 방이전에 대한 감면)	○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등의 해당 지역 거주목적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 12. 31. → (개정안) 2030. 12. 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4조제1항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	안 제74조제3항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3	안 제74조제4항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4	안 제74조제5항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5	안 제75조의2제1항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6	안 제75조의4제1항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	○ 세수감소 규모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7	안 제75조의5제1항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	
8	안 제78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9	안 제78조제2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10	안 제78조제3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11	안 제78조제4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12	안 제78조제9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13	안 제78조의2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	

14	안 제78조의3제1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	
15	안 제78조의3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	
16	안 제78조의3제3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	○ 세수감소 규모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17	안 제81조제1항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18	안 제81조제2항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 세수감소 규모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19	안 제81조제3항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2025년 중 통과되어 감면의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한다고 가정
- (안 제54조제1항) 최근 5년간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 49.6억원
- (안 제74조제3항)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실적은 2019년 1,134억원에서 2023년 1,159원으로 매년 그 증감추이가 불분명하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 1,232억원

- (안 제74조제4항) 2020년 0.4억원, 2021년 1.8억원, 2022년 23.0억원, 2023년 13.7억원으로 연도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편차가 크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매년 균일하게 이뤄지지 않으며 특정 연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경우 취득세 감면 소요가 발생한 데 기인하므로, 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추계
 - 최근 4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 9.7억원
- (안 제74조제5항)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2020년 71.3억원에서 2022년 136.0억원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 107.6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4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최근 4년간 취득세 감면실적: 100.1억원
- (안 제75조의2제1항)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19년 13.6억원에서 2021년 30.4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 15.3억원으로 다시 감소하여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 21.3억원
 - (재산세) 2019년 3.8억원에서 2020~2022년 2억원대의 실적을 보이다가 2023년 8.6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재산세 연평균 감면액: 3.9억원
- (안 제75조의5제1항) 인구감소지역에서 중소·벤처기업 창업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3년 감면실적을 유지한다는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

- 인구감소지역에서 중소·벤처기업 창업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2023년 지방세 감면실적은 47.3억원(취득세 46.9억원, 재산세 0.4억원) 수준
 - 동 조문은 2022년 신설, 2023년부터 시행
- (안 제78조제1항)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등 조성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19년 286.8억원에서 2022년 332.1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 158.4억원으로 다시 감소하여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 276.1억원
 - (재산세) 2019년 100.3억원에서 2023년 107.8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율: 1.8%
- (안 제78조제2항)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조성 후 산업용 건축물 등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19년 8.6억원에서 2020년 12.5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2022년 4.6억원)하여 2023년 9.2억원으로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 8.5억원
 - (재산세) 2019년 35.3억원에서 2023년 16.3억원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율: -17.6%
- (안 제78조제3항)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 후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19년 55.9억원에서 2021년 120.5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23년 68.7억원으로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 66.7억원

○ (재산세) 2020년 36.0억원에서 2023년 16.5억원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4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율: -22.9%

□ (안 제78조제4항)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19년 1,905.3억원에서 2022년 3,242.2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23년 1,951.3억원으로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 2,244.1억원

○ (재산세) 2019년 452.2억원에서 2023년 386.9억원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율: -3.8%

□ (안 제78조의2)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19년 9.3억원에서 2021년 14.3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 4.4억원으로 감소하여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 6.4억원

○ (재산세) 2019년 10.9억원에서 2023년 7.5억원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율: -9.1%

□ (안 제78조의3제1항)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20년 20.8억원에서 2023년 70.2억원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4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 37.2억원
- (재산세) 최근 4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4년간 재산세 연평균 감면액: 1.3억원
- (안 제78조의3제2항)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20년 4.2억원에서 2021~2022년 0.5억원까지 감소 후 2023년 9.5억원으로 증가하여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4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4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 3.2억원
 - (재산세) 최근 4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4년간 재산세 연평균 감면액: 0.5억원
- (안 제81조제1항) 이전공공기관이 이전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19~2022년 감면실적이 평균 210만원으로 감면규모가 작으므로 2023년 감면실적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 2023년 취득세 감면액: 1.5억원
 - (재산세) 2019년 51.2억원에서 2023년 4.8억원으로 최근 5년간 감면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3년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2023년 재산세 감면액: 4.8억원
- (안 제81조제3항)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등이 해당 지역의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하에 추계
 -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실적 연평균 증감율: -38.5%

- (안 제75조의4제1항) 반환공여구역 등에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제도가 시행된 2023년 기준 취득세 감면실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라 취득세 면제규정의 적용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가정
- (안 제78조제9항) 산업기술단지 입주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배제는 2024년 시행되어 현재는 지방세 감면실적을 확인할 수 없어 향후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할 수 없음
- (안 제78조의3제3항)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은 최근 감면실적이 없음을 감안할 때, 감면규정 적용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가정
- (안 제81조제2항)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은 최근 감면실적을 감안할 때, 감면규정 적용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가정
 - 2023년 등록면허세 감면액: 12.5만원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54조제1항)

(1)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

- (제도개요)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5% 감면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단,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25%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음
- (추계방법) 최근 5년간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 49.6억원

[표 2]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추이: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40.4	87.2	22.9	75.4	22.3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6년 49.6억원, 2030년 49.6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48.2억원(연평균 49.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취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54조제1항)	-49.6	-49.6	-49.6	-49.6	-49.6	-248.2	-49.6

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74조제3항)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¹⁾ 또는 보류지²⁾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 감면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추계방법)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실적은 2019년 1,134억원에서 2023년 1,159원으로 매년 그 증감추이가 불분명하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 1,232억원

[표 4]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추이: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1,134	1,169	1,127	1,569	1,15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체비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6년 1,232억원, 2030년 1,232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6,160억원(연평균 1,2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1)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환지는 사업시행 이전의 토지 소유권을 변화시키지 않고, 종전 토지의 위치·지적·이용상황·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이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시키는 개발방식)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을 의미함. 보통 보류지 중 사업시행자가 경비충당 등을 위하여 매각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함
2) 환지 계획을 담당하는 시행자가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보류해 놓은 땅으로, 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공용 목적으로 사용함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취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체비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74조제3항)	-1,232	-1,232	-1,232	-1,232	-1,232	-6,160	-1,232

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74조제4항)

(1)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

□ (제도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

- 2019년 말 세법개정으로 신설되어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율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의 75% 감면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 취득세의 75% 감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 취득세 100% 감면

□ (추계방법) 2020년 0.4억원, 2021년 1.8억원, 2022년 23.0억원, 2023년 13.7억원으로 연도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편차가 크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매년 균일하게 이뤄지지 않으며 특정 연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경우 취득세 감면 소요가 발생한 데 기인하므로, 평

균 실적을 기준으로 추계

- 최근 4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 9.7억원

[표 6]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추이: 2020~2023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0.4	1.8	23.0	13.7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6년 9.7억원, 2030년 9.7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48.5억원(연평균 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취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주 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적용 기한 연장(안 제74 조제4항)	-9.7	-9.7	-9.7	-9.7	-9.7	-48.5	-9.7

라. 재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 74조제5항)

(1)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

- (제도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 2019년 말 세법개정으로 신설되어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율

-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의 50% 감면
-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의 50% 감면
-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①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75% 감면, ②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감면

□ (추계방법)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2020년 71.3억원에서 2022년 136.0억원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 107.6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4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최근 4년간 취득세 감면실적: 100.1억원

[표 8]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추이: 2020~2023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71.3	85.4	136.0	107.6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6년 100.1억원, 2030년 100.1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500.5억원(연평균 100.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9]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취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74조제5항)	-100.1	-100.1	-100.1	-100.1	-100.1	-500.5	-100.1

마.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75조의2제1항)

(1)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

□ (제도개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에서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 금액 및 고용 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적용하여 감면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대상 사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 (추계방법)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19년 13.6억원에서 2021년 30.4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 15.3억원으로 다시 감소하여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 21.3억원
- (재산세) 2019년 3.8억원에서 2020~2022년 2억원대의 실적을 보이다가 2023년 8.6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재산세 연평균 감면액: 3.9억원

[표 10]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실적 추이: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17.4	24.4	32.7	27.3	24.0
- 취득세	13.6	22.2	30.4	24.7	15.3
- 재산세	3.8	2.2	2.3	2.6	8.6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6년 25.2억원, 2030년 25.2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26.0억원(연평균 25.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취득세 및 재산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지역도시개발구역 내 창업자 등에 대한 지방 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75조의2제1항)	-25.2	-25.2	-25.2	-25.2	-25.2	-126.0	-25.2
- 취득세	-21.3	-21.3	-21.3	-21.3	-21.3	-106.5	-21.3
- 재산세	-3.9	-3.9	-3.9	-3.9	-3.9	-19.5	-3.9

바. 반환공여구역 등에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75조의4제1항)

□ (제도개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100% 감면

- 2021년 말 세법개정에 따라 신설되어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추계결과) 제도가 시행된 2023년 기준 취득세 감면실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감면규정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또한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창업하기 위하여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개별 의사결정 사안으로 향후 추이와 규모를 전망하기 곤란한 측면도 존재함

사. 인구감소지역 중소·벤처기업 창업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75조의5제1항)

(1)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

□ (제도개요)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

- 2022년 말 세법개정으로 신설되어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을
 -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00% 면제
 - 해당용도 직접 사용 부동산(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에 대해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경감
 - 동법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라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 초과 시 면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85% 감면
-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제12호)³⁾
 - 현재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5호)

□ (추계방법) 향후 취득세 및 재산세 세수효과는 2023년 감면실적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인구감소지역에서 중소·벤처기업 창업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2023년 지방세 감면실적은 47.3억원(취득세 46.9억원, 재산세 0.4억원) 수준
 - 동 조문은 2022년 신설, 2023년부터 시행⁴⁾

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4) 동 조문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현재(2025.2월 기준) 2023년 감면실적만 확인 가능

[표 12]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 실적: 2023년

(단위: 억원)

	취득세	재산세	합계
감면실적	46.9	0.4	47.3

주: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2024)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6년 47.3억원, 2030년 47.3억원 등 2026~2030년까지 5년간 총 236.4억원(연평균 47.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취득세 및 재산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인구감소지역 중소·벤처기업 창업 목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75조의5제1항)	-47.3	-47.3	-47.3	-47.3	-47.3	-236.4	-47.3
- 취득세	-46.9	-46.9	-46.9	-46.9	-46.9	-234.3	-46.9
- 재산세	-0.4	-0.4	-0.4	-0.4	-0.4	-2.2	-0.4

아.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78조제1항)

(1)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

- (제도개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율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 감면
- 조성공사 시행 중인 토지: 재산세 35% (수도권 외 60%)

□ (추계방법)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19년 286.8억원에서 2022년 332.1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 158.4억원으로 다시 감소하여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 276.1억원
- (재산세) 2019년 100.3억원에서 2023년 107.8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율: 1.8%

[표 14]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용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387.2	363.2	436.2	446.6	266.2
- 취득세	286.8	277.0	326.1	332.1	158.4
- 재산세	100.3	86.2	110.4	114.5	107.8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6년 389.8억원, 2030년 398.3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970.1억원(연평균 394.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취득세 및 재산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산업단지 등 조성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78조제1항)	-389.8	-391.9	-394.0	-396.1	-398.3	-1,970.1	-394.0
- 취득세	-276.1	-276.1	-276.1	-276.1	-276.1	-1,380.4	-276.1
- 재산세	-113.8	-115.8	-117.9	-120.1	-122.2	-589.8	-118.0

자.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의 개발·조성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78조제2항)

□ (제도개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율

-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취득세 35%, 재산세 35%(비수도권 60%) 감면

-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 5년간 재산세 35%(비수도권 60%) 감면

□ (추계방법)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조성 후 산업용 건축물 등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19년 8.6억원에서 2020년 12.5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23년 9.2억원으로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 8.5억원

○ (재산세) 2019년 35.3억원에서 2023년 16.3억원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율: -17.6%

[표 16]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43.9	44.5	34.3	27.3	25.5
－ 취득세	8.6	12.5	7.7	4.6	9.2
－ 재산세	35.3	32.0	26.6	22.7	16.3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의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분양 또는 임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6년 17.6억원, 2030년 12.7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74.6억원(연평균 14.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취득세 및 재산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산업단지 등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분양·임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78조제2항)	-17.6	-16.0	-14.7	-13.6	-12.7	-74.6	-14.9
－ 취득세	-8.5	-8.5	-8.5	-8.5	-8.5	-42.6	-8.5
－ 재산세	-9.1	-7.5	-6.1	-5.1	-4.2	-32.0	-6.4

차.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조성 후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78조제3항)

- (제도개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율

-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취득세 35%, 재산세 5년간 35%(비수도권 60%) 감면
-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5년간 재산세 35%(비수도권 60%)

□ (추계방법)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 후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19년 55.9억원에서 2021년 120.5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2022년 41.9억원)하여 2023년 68.7억원으로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 66.7억원
- (재산세) 2020년 36.0억원에서 2023년 16.5억원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4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율: -22.9% (2019년 재산세 감면액 (75.4억원)은 제외)

[표 18]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조성 후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야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131.3	82.3	149.1	63.6	85.2
- 취득세	55.9	46.3	120.5	41.9	68.7
- 재산세	75.4	36.0	28.6	21.7	16.5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 후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6년 74.2억원, 2030년 69.3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357.4억원(연평균 71.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9]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취득세 및 재산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산업단지 등 개발·조성 후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78조제3항)	-74.2	-72.5	-71.2	-70.1	-69.3	-357.4	-71.5
- 취득세	-66.7	-66.7	-66.7	-66.7	-66.7	-333.4	-66.7
- 재산세	-7.5	-5.8	-4.5	-3.5	-2.7	-24.0	-4.8

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78조제4항)

□ (제도개요)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유치지역 또는 산업기술단지에서 취득하는 산업단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을
 -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35%(비수도권 60%)
 - 산업단지 등에서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취득세 25%

□ (추계방법)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 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19년 1,905.3억원에서 2022년 3,242.2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23년 1,951.3억원으로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 2,244.1억원
- (재산세) 2019년 452.2억원에서 2023년 386.9억원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율: -3.8%

[표 20]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2,357.6	2,974.1	1,989.2	3,678.1	2,338.3
- 취득세	1,905.3	2,556.1	1,565.6	3,242.2	1,951.3
- 재산세	452.2	417.9	423.6	435.9	386.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6년 2,588.4억원, 2030년 2,538.7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조 2,815억원(연평균 2,56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2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취득세 및 재산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78조제4항)	-2,588.4	-2,575.2	-2,562.5	-2,550.4	-2,538.7	-12,815.1	-2,563.0
- 취득세	-2,244.1	-2,244.1	-2,244.1	-2,244.1	-2,244.1	-11,220.6	-2,244.1
- 재산세	-344.2	-331.1	-318.4	-306.3	-294.5	-1,594.5	-318.9

타. 산업기술단지 입주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중과배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78조제9항)

- (제도개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중과배제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말 세법개정에 따라 신설되어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추계결과) 산업기술단지 입주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배제 적용기한 연장은 2024년 시행으로 현재 지방세 감면실적을 확인할 수 없어 향후 지방세 감면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수 없음
- 해당 규정에 따라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동 비용 추계는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파.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78조의2)

- (제도개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율: 취득세 35%, 재산세 50%
 - 2022년 이전 제78조제6항 (2023년 이후 본조로 이동)
- (추계방법)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19년 9.3억원에서 2021년 14.3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 4.4억원으로 감소하여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 6.4억원
 - (재산세) 2019년 10.9억원에서 2023년 7.5억원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율: -9.1%

[표 22]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20.2	11.1	22.0	9.6	11.9
－ 취득세	9.3	2.5	14.3	1.4	4.4
－ 재산세	10.9	8.6	7.7	8.1	7.5

주: 2022년까지는 제78조제6항 감면실적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6년 12.0억원, 2030년 10.2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55.3억원(연평균 11.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2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취득세 및 재산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78조의2)	-12.0	-11.5	-11.0	-10.6	-10.2	-55.3	-11.1
－ 취득세	-6.4	-6.4	-6.4	-6.4	-6.4	-32.0	-6.4
－ 재산세	-5.6	-5.1	-4.6	-4.2	-3.8	-23.4	-4.7

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78조의3제1항)

- (제도개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율

- 취득세: 사업개시일 5년(일부사업은 3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외국인투자비용을 공급한 세액인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취득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용을 공급한 세액)의 100% 감면, 이후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50% 감면
- 재산세: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5년간(일부사업은 3년)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용을 공급한 세액)의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경감

□ (추계방법) 외국인투자 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20년 20.8억원에서 2023년 67.1억원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4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 37.2억원
- (재산세) 최근 4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4년간 재산세 연평균 감면액: 1.3억원

[표 24] 외국인투자 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 2020~2023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21.4	18.6	43.6	70.2
- 취득세	20.8	18.1	42.8	67.1
- 재산세	0.6	0.5	0.8	3.2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6년 38.5억원, 2030년 38.5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92.3억원(연평균 38.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2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취득세 및 재산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외국인투자 신고사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78조의3제1항)	-38.5	-38.5	-38.5	-38.5	-38.5	-192.3	-38.5
- 취득세	-37.2	-37.2	-37.2	-37.2	-37.2	-186.0	-37.2
- 재산세	-1.3	-1.3	-1.3	-1.3	-1.3	-6.3	-1.3

거.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78조의3제2항)

□ (제도개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을
 - 취득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100% 감면
 - 재산세: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5년간(일부사업은 3년) 재산세 감면대상세액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용을 곱한 세액)의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경감

□ (추계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
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20년 4.2억원에서 2021~2022년 0.5억원까지 감소 후 2023
년 9.5억원으로 증가하여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4년
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4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 3.2억원
- (재산세) 최근 4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4년간 재산세 연평균 감면액: 0.5억원

[표 26]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 2020~2023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4.2	0.5	0.5	9.5
－ 취득세	3.8	0.0	0.0	9.1
－ 재산세	0.4	0.5	0.5	0.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6년 3.7억원, 2030년 3.7억 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8.4억원(연평균 3.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2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취득세 및 재산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에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78조의3제2항)	-3.7	-3.7	-3.7	-3.7	-3.7	-18.4	-3.7
－ 취득세	-3.2	-3.2	-3.2	-3.2	-3.2	-16.1	-3.2
－ 재산세	-0.5	-0.5	-0.5	-0.5	-0.5	-2.3	-0.5

너.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안 제78조의3제3항)

- (제도개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율
 - － 취득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100% 감면

- 재산세: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5년간(일부사업은 3년)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의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경감
- (추계결과) 제도가 시행된 2020년 이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실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감면규정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81조제1항)

- (제도개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율: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추계방법) 이전공공기관이 이전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19~2022년 감면실적이 평균 210만원으로 감면규모가 작으므로 2023년 감면실적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 2023년 취득세 감면액: 1.5억원
 - (재산세) 2019년 51.2억원에서 2023년 4.8억원으로 최근 5년간 감면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3년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2023년 재산세 감면액: 4.8억원

[표 28]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51.2	37.1	23.5	17.4	6.3
- 취득세	0.04	0.04	0.0	0.0	1.5
- 재산세	51.2	37.1	23.5	17.4	4.8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6년 6.3억원, 2030년 6.3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31.5억원(연평균 6.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29]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취득세 및 재산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목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81조제1항)	-6.3	-6.3	-6.3	-6.3	-6.3	-31.5	-6.3
- 취득세	-1.5	-1.5	-1.5	-1.5	-1.5	-7.5	-1.5
- 재산세	-4.8	-4.8	-4.8	-4.8	-4.8	-24.0	-4.8

러.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81조 제2항)

- (제도개요)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면제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추계결과) 2023년 등록면허세 감면실적이 12.5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표 30]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실적 추이: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0	0	0	0	0.00125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며. 이전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의 거주목적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81조제3항)

□ (제도개요)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등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내용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00% 면제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75% 감면

－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62.5% 감면

□ (추계방법)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등이 해당 지역의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 수효과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하에 추계

○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실적 연평균 증감율: -38.5%

[표 31]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거주목적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추이: 2020~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48.3	31.2	24.9	19.9	6.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등의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6년 1.6억원, 2030년 0.2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3.8억원(연평균 0.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32]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취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의 거주목적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81조제1항)	-1.6	-1.0	-0.6	-0.4	-0.2	-3.8	-0.8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세제분석2과	신미정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
신미정	02-6788-4837	mjshin@assembly.go.kr